

FTA 품목분류

코코넛 워터와 FTA

김성채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사무관

코코넛 워터와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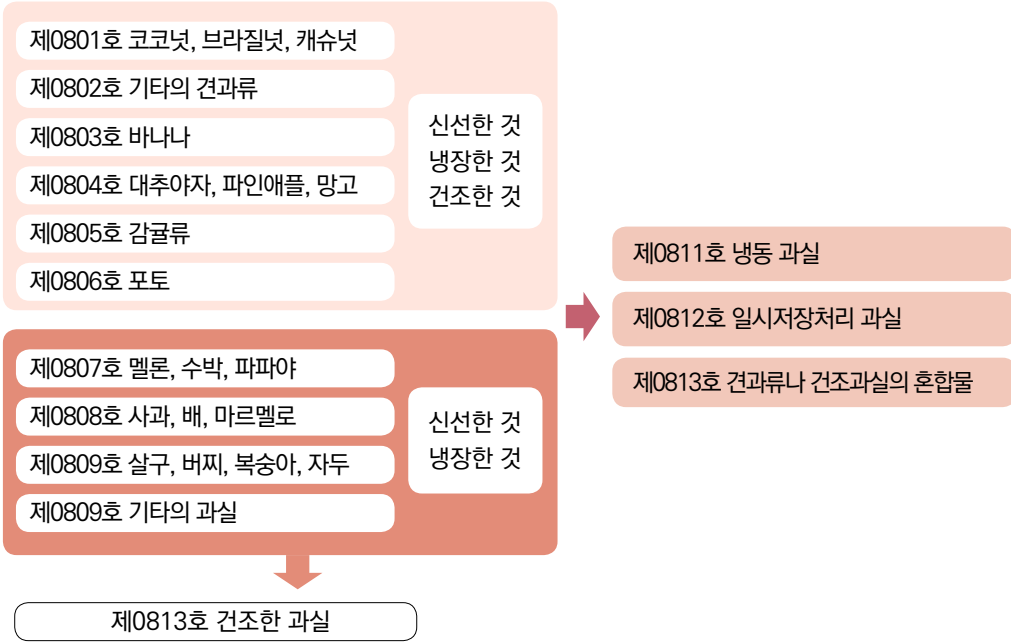
김성채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사무관

1. 코코넛은 견과류인가?

관세율표 제8류에는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edible fruits and nuts)가 분류되며, 제8류 각 호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0813호 건조한 과실

제8류에서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상태의 과실 및 견과류를 10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0801호에서 제0810호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과실과 견과류를 냉동한 것은 제0811호에,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은 제0812호에 분류하고 있다.

제0801호부터 제0806호에는 신선한 과실과 건조한 과실을 모두 포함하며, 제0807호부터 제0810호에 해당하는 과실을 건조한 것은 제0813호에 분류하고 있다.

제08류의 분류체계상 견과류(nuts)가 포함되는 호는 제0801호(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와 제0802호(제080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견과류)이다.

HS 품목분류표에서 말하는 ‘nut’가 우리말의 ‘견과류’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인지는 다소 모호하다.

사전적 의미로 견과류란 식물학적으로는 밤, 도토리, 개암, 호두 등과 같은 속씨식물의 열매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꺼운 껍질로 둘러싸인 단단한 질감의 열매들인 땅콩, 아몬드, 잣, 피칸, 해바라기씨 등을 두루 부르는 말이다. (Daum 백과사전)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견과류에 포함되는 땅콩(제1202호), 해바라기씨(제1206호) 등은 제8류에서 제외되며, 도토리의 경우 식물학적으로는

밤과 매우 유사하지만 HS 품목분류표의 특정 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제2308호에 분류된다.¹⁾

반면, 코코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견과류와 같이 껍질 속 먹는 부분이 단단한 질감의 열매는 아니지만 HS 품목분류표상으로는 브라질넛, 캐슈넛과 함께 제0801호에 분류되고 있다.

우리가 국문 용어인 ‘견과류’라는 표현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분류일 수도 있으나, 품목분류는 어차피 호의 용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코코넛이 제0801호로 분류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없다.



1) 제8류에는 통상 과실이나 음식재료로 사용되는 열매나 견과류가 분류되는데, 도토리는 유럽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먹기 부적합한 열매이므로 견과류의 한 종류로서 HS 품목분류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2308호에는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식물성 물질이 분류되는데, 이 호 해설서에는 ‘(1)도토리와 마로니에 열매’를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2. 코코넛의 품목분류와 FTA 관세율

코코넛을 그대로 채취한 것이나 바깥쪽의 섬유질 껍질을 벗긴 것 모두 제0801호에 분류된다. 또한 코코넛을 건조하여 체를 친 과육 또한 제0801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코코넛의 과육 부분을 착유를 위하여 건조한 코프라(copra, 야자유(coconut oil)를 짜는데 사용)는 그 상태로는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1203호에 분류된다.

코코넛의 껍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재료로서 제1404호에 분류되며, 기름을 짜고 남은 코프라의

박(residue)이나 가루는 사료용에 적합한 식물성 부산물로서 제2308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제8류 물품은 대부분 30% 내외의 높은 기본관세가 적용되며,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에서도 제8류 물품은 양허하지 않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코넛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일부 FTA에서 식물방역 차원에서 양허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양허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HSK 품목번호	품명	FTA별 양허관세율(%)				
		한-중	한-미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EU
0801.11-0000	말린 코코넛	12	0	0	0	0
0801.12-0000	내피를 벗기지 않은 코코넛	12	0	0	0	0
0801.19-0000	기타의 코코넛	12	0	0	0	0
1203.00-0000	코프라	0	0	0	0	0

3. 코코넛 워터는 과실 주스인가? - WCO HS 위원회

'15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제56차 WCO HS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물품의 품목분류 안건을 상정하였다.

코코넛 워터(coconut water). 초록색 코코넛 으로부터 채취된 코코넛 워터(99.95%)에 0.05%의 설탕을 가미한 것.

코코넛 워터 자체는 천연의 코코넛 향을 띠고 있으며, 미량의 설탕(0.05%)은 코코넛 열매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 맛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첨가된 것임.

코코넛 워터는 290ml 용량의 유리병에 담겨져서 24개 묶음으로 제시됨.

코코넛 워터란?

코코넛 워터는 덜 익은 코코넛 안에 들어 있는 달고 투명한 액체를 말한다. 코코넛 열매 속에 자연적으로 생기며 액상의 배젖이라 불리기도 한다.

코코넛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코코넛 워터를 따라 낸 다음 그대로 마시기도 한다.

코코넛이 익어가면서 이 액체는 과육에 흡수되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대신 과육은 더 두껍고 단단해

지며 코코넛이 완전히 익은 뒤에는 코코넛 워터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코코넛이 완전히 익은 후에 잘 익은 코코넛 과육을 갈거나 착즙하면 유백색의 걸쭉한 액상이 되는데 이것은 코코넛 워터가 아니라 코코넛 밀크로 불린다.

코코넛 밀크는 우유처럼 음료로 마시거나 음식 또는 소스 재료로 사용된다.

코코넛 워터의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에서 코코넛 워터가 분류될 만한 호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제2009호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2202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HS 위원회에서 코코넛 워터가 논의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이 물품을 제2009호의 과실주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202호로

분류한 바 있다.

제2009호와 제2202호 물품의 FTA 세율은 다음과 같다.

HSK 품목번호	품명	FTA별 양허관세율(%)				
		한-중	한-미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EU
2009.89-1090	기타의 과실주스	50	5	40	20	0
2202.99-9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의 음료	3.2	0	0	0	0

코코넛 워터를 제2202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로 보는 경우 한-중 FTA에서만 3.2%의 관세를 부과할 뿐,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0%의 양허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의 과실주스로 볼 경우 한-중(50%), 한-아세안(40%), 한-베트남(20%) FTA에서 모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코코넛 워터 품목분류상의 쟁점

제2202호에는 제2009호의 과실주스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넛 워터가 제2009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HS 위원회는 코코넛 워터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할 쟁점을 검토하였다.

① 주스는 압착이나 분쇄에 의해서만 얻어지는가?

HS 제2009호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generally) 신선하고 잘치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중략)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다음 공정으로 처리한다. (중략)

(d) 균질화(homogenisation) : 다육질의 과실(토마토·복숭아 등)에서 얻은 특정 주스의 경우 (중략)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한 결과 얻어진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는 보통 투명하고 미발효된 액체일 수도 있다.

특정 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부순 형태의 과육부분을 함유하고 있다(현탁액이나 침전 상태일 수도 있다).

HS 해설서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완숙한 과실을 압착하여 즙을 내거나 (토마토나 복숭아의 경우처럼) 그라인딩하여 미세하게 부순 형태의 과육이 현탁액이나 침전상태로 함유된 걸쭉한 액상으로 만든 것을 주스의 형태로 예시하고 있다.

몇몇 회원국은 이 해설을 근거로 주스란 과실을 압착(squeezing) 또는 분쇄(crushing, grinding) 하여 얻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히 덜 익은 코코넛의 껍질을 깨거나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물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얻어진 것은 주스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해설서의 설명은 주스를 얻는 가장 흔한 방식의 예시를 든 것일 뿐, 해설서의 내용이 주스를 얻는 방식을 제한하는 법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코코넛에서 얻어진 천연의 액체를 주스로 보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② 코코넛은 과실(fruits)인가 견과류(nuts)인가?

앞서 언급한 제8류의 분류체계로 본다면 맥락상 제0801호와 제0802호에는 견과류(nuts)가 분류되고, 제0803호부터 제0810호에는 견과류 이외의 과실(fruits)이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코넛은 과실(fruits)이 아닌 견과류(nuts)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코코넛이 브라질넛이나 캐슈넛과 함께 제

0801호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분류학상으로 견과류로 보기는 어려우며 견과류가 아닌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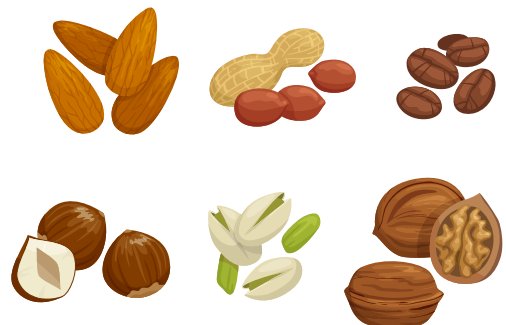
코코넛을 과실로 본다면 그리고 코코서 워터 또한 주스로 본다면 이를 제2009호에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코코넛을 견과류(nuts)로 본다면 제2009호의 용어상 견과류 주스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제2009호의 과실주스에는 견과류주스가 포함되는가?

영문판 HS 품목분류표 제2009호의 용어는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fruit juices and vegetable juices)’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호에는 견과류주스(nut juices)는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HS 위원회는 제2009호 호의 용어상 불문판과 영문판의 불일치에 주목했다. 즉 불문판 호의 용어상으로는 과실주스만이 아니라 견과류주스도 제2009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4. 코코넛 워터의 품목분류

앞서 말한 쟁점에 따라 코코넛 워터의 품목분류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57차 HS 위원회('16.3월)는 투표결과 28대 7로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로 분류하였다.

제2009호에 분류	제2202호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넛은 분류학상으로 견과류가 아닌 과실로 보아야 함 - 과실주스라는 것이 반드시 과실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코코넛 워터 또한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과실에서 얻어진 천연의 액상이므로 주스로 볼 수 있음 - 코코넛을 견과류로 본다 하더라도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로 분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 (불문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분류체계상 코코넛은 제0801호의 견과류임 - 제2009호에는 견과류 주스는 포함되지 않음 (영문판) - 코코넛 워터는 주스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얻어짐

5. 코코넛 워터와 2022년 HS 개정

HS 위원회에서의 코코넛 워터 품목분류 결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2009호의 불문판과 영문판 호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HS 품목분류표가 일부 개정되었고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p>20.09 - 과일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20.09 - 과일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2009.8 - 그 밖의 한 가지 과일이나 채소로 된 주스</p>	<p>2009.8 - 그 밖의 한 가지 과일·견과류나 채소로 된 주스</p>

6. FTA 측면의 착안사항

HS 위원회에서의 분류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이전에 제2202호로 분류하였던 코코넛 워터를 제2009호로 변경 결정하였다.

이는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를 통하여) 0% 양허관세가 적용되던 물품이 40%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일주스나 채소주스가 추가제조공정에서 본래의 천연주스에서 유지하는 양보다 많은 물이나 탄산가스를 포함한 경우 제2009호에서 제외되며, 과일주스를 첨가하여 향미를 준 음료 또한 제2009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분 아니라 설탕·감미료·향미제·보존제 등이 천연 주스의 구성 성분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첨가된 경우에도 제2009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0% 코코넛 워터로만 되어 있는 (혹은 위 사례처럼 코코넛 워터에 미량의 설탕만 첨가된) 것이 아니라 코코넛 워터 베이스에 물, 설탕, 감미료나 기타 조제품이 충분히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제2202호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므로 여전히 FTA를 통한 관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FTA 관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100% 코코넛 워터로 구성된 것보다는 코코넛 워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입하고자 하는 코코넛 워터 조제품이 제2202호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현명한 접근이 될 것이다.